

## 자동차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성별	남성	나이	38세	직종	자동차공장 작업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2004년 10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년 11월 창백한 안색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검사결과에서 이상소견(WBC 2780, ANC 685, Hb 9.1, Platelet 16,000)이 확인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7년 12월 14일 골수검사를 통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글라스 공정에서 사용한 세척제와 트림 라인에서 사용한 신너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상기 질환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18년 4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4월 2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약 8년 정도 선반, 레일장착, 도어작업, 글라스 작업등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3개월 동안 샴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작업공정에 국소배기장치는 없었으며, 외부 출입문을 통해서만 환기를 했다고 한다. 현재에는 천장에 조그만 환기팬이 있으나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는 없는 상태이다. 방독마스크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방독마스크는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이다. 불침투성 보호장갑은 지급되지 않았고 면장갑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 이전의 도장작업 1년 6개월을 고려하여 전체 근무기간 중 벤젠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무기간 5년 7개월의 누적 노출량은 2ppm·years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2017년 11월 경 창백한 안색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받았으며, 혈액 검사 결과상 (WBC: 1840, ANC: 810, platelet 10,000, Hgb 7.9)로 범혈구감소증 소견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017년 12월 14일 골수 검사를 통해 상세불명의 MDS를 진단받고 2019년 5월 동종 조혈모 이식치료 후에 현재 경과 관찰 중이다. 근로자 이전 약 2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음주는 2주에 1회, 1회당 소주 2~3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제출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요관 결석, 엄지손가락과 상완을 포함한 정형외과 진료력이 있었다. 근로자는 2남 중 첫째로, 백화점 정육파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동생이 혈액 암으로 약 4년 전 사망하여 혈액암에 관련한 가족력이 있었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만38세인 2017년 12월 상세불명의 MDS를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04년 10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약 1년 6개월간 △사업장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장에 입사 후 8년간 선반, 레일 장착, 도어, 글라스 작업 등을 하였고, 이후 5년 3개월간은 샴시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 입사 이전의 도장작업 1년 6개월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벤젠노출가능성에 대해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인 5년 7개월의 누적 노출량은 2ppm·years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